

#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07.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2-335-25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2.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07.(금)	2025.02.19.(수)	2025.02.20.(목)	2025.02.21.(금)	2025.02.27.(목)	2025.03.03.(월)~ 2025.03.07.(금)	2025.03.10.(월)~ 2025.03.12.(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042-335-25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으로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시행일과 본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차이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194호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일(2021.12.24.)로 관계법령 적용 현장으로 현행 기준 법령 일자가 아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와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적용이 아닌 현행법 기준으로 일부 적용될 수 있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22/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X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대전광역시 동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 입주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0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2.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2.19.(수)	2025.02.20.(목)	2025.02.21.(금)	2025.02.27.(목)	2025.03.03.(월)~ 2025.03.07.(금)	2025.03.10.(월)~ 2025.03.12.(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번지)</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과 - 2719호 (2025. 2. 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39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33층, 10개동, 총 952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 558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394세대  
[특별공급 193세대(기관추천 38세대, 다자녀가구 39세대, 신혼부부 70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3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단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703	01	1단지	059.9865A	59A1	59.9865	21.9068	81.8933	50.6838	132.5771	33.8431	173	15	17	33	5	16	86	87	8
	02	2단지		59A2	59.9865	21.7659	81.7524	50.0988	131.8512	33.6885									
	03	2단지		59A3	59.9865	21.7659	81.7524	50.0988	131.8512	33.6885									
	04	2단지		59A4	59.9865	21.7659	81.7524	50.0988	131.8512	33.6885									
	05	1단지	059.9977B	59B1	59.9977	22.2726	82.2703	50.6933	132.9636	33.9989	180	20	18	31	4	15	88	92	8
	06	1단지		59B2	59.9977	22.2726	82.2703	50.6933	132.9636	33.9989									
	07	2단지		59B3	59.9977	22.1317	82.1294	50.1081	132.2375	33.8439									
	08	1단지	059.9943C	59C	59.9943	21.7573	81.7516	50.6904	132.4420	33.7845	18	-	2	3	1	2	8	10	1
	09	1단지	074.9894B	74B	74.9894	26.6946	101.6840	63.3601	165.0441	42.0217	23	3	2	3	1	2	11	12	-
합 계											394	38	39	70	11	35	193	201	17

※ 사업계획승인사항에 따라 1단지(101동~108동)와 2단지(109동~110동)를 통합하여 공고하며, 단지 및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9865A	059.9977B	059.9943C	074.9894B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1, 59A2, 59A3, 59A4	59B1, 59B2, 59B3	59C	7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059.9865A 청약 신청 시 동·호수 배정은 약식표기 59A1, 59A2, 59A3, 59A4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되오니,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059.9977B 청약 신청 시 동·호수 배정은 약식표기 59B1, 59B2, 59B3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되오니,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구분	타입 (약식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08-20	2025-12-19	2026-04-20	2026-08-20	2026-12-21	2027-04-22	
059.9865 A	59A1	101동 3호 102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3호	120	1층	1	125,353,103	253,246,897	378,600,000	10,000,000	8,93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132,510,000
				2층	6	128,020,190	257,579,810	385,600,000	10,000,000	9,28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34,960,000
				3~5층	18	130,687,278	268,912,722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95	133,354,365	279,245,635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59A2	109동 5,6호	23	1층	1	124,832,658	253,767,342	378,600,000	10,000,000	8,93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132,510,000
				2층	2	127,488,672	258,111,328	385,600,000	10,000,000	9,28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34,960,000
				3~5층	4	130,144,686	269,455,314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16	132,800,700	279,799,30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59A3	109동 5호	14	3~5층	2	131,781,923	267,818,077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12	134,471,350	278,128,65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59A4	109동 5호	16	6층 이상	16	134,407,500	278,192,50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059.9977 B	59B1	101동 2호 104동 2호 106동 4호 107동 1,4호 108동 1호	112	1층	5	122,168,792	256,431,208	378,600,000	10,000,000	8,93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2층					6	124,768,128	260,831,872	385,600,000	10,000,000	9,28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34,960,000
3~5층					16	127,367,464	272,232,536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85	129,966,800	282,633,20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59B2		107동 1호 108동 1호	24	3~5층	2	128,086,735	271,513,265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22	130,700,750	281,899,25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59B3		109동 3호 110동 2호	44	1층	2	121,962,838	256,637,162	378,600,000	10,000,000	8,93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132,510,000
				2층	2	124,557,792	261,042,208	385,600,000	10,000,000	9,28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34,960,000
				3~5층	6	127,152,746	272,447,254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34	129,747,700	282,852,30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059.9943C		104동 1호	18	1층	1	124,695,418	253,904,582	378,600,000	10,000,000	8,93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132,510,000
				2층	1	127,348,512	258,251,488	385,600,000	10,000,000	9,28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34,960,000
	3~5층			3	130,001,606	269,598,394	399,600,000	10,000,000	9,98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39,860,000	
	6층 이상			13	132,654,700	279,945,300	412,600,000	10,000,000	1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44,410,000	
074.9894B	106동 1호	23	6층 이상	23	164,160,430	356,139,570	520,300,000	10,000,000	16,015,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182,105,000	

## ■ 공통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근생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대지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에서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5%), 중도금(1~6회차 60%), 잔금(35%)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해당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선행세대(선행하여 시공,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선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구 분	059.9865A	059.9977B	059.9943C	074.9894B	합계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3	-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3	-	1	6	
		중소기업 근로자	3	5	-	-	8	
		시책추진	1	1	-	-	2	
		장애인	대전광역시	3	4	-	1	8
			세종특별자치시	1	1	-	-	2
			충청남도	1	1	-	-	2
	소계	15	20	-	3	3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	18	2	2	39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31	3	3	7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4	1	1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16	15	2	2	35			
합 계	86	88	8	11	19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p>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li>■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주민등록표 등·초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 (4) 무주택 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청약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인 청약자와 만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2세인 무주택인 청약자와 만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p> <p>※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산정 : 청약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청약자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8세인 청약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청약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p>
---

**4-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li> <li>■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li> <li>■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②부양가족수</td> <td>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b>■ 무주택기간</b> 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b>■ 만 60세 이상</b> 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li> </ul> </li> </ul> </li> </ul>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b>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p><b>당첨자 선정방법</b></p>	<p>■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b>소득구분</b></p>					
	<p><b>단계</b></p>	<p><b>소득구분</b></p>	<p><b>내용</b></p>			
	<p>1단계</p>	<p>신생아 우선공급(15%)</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p>			
	<p>2단계</p>	<p>신생아 일반공급(5%)</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p>			
	<p>3단계</p>	<p>우선공급(35%)</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p>			
	<p>4단계</p>	<p>일반공급(15%)</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p>			
<p>5단계</p>	<p>추첨공급</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62 877 1153 949"> <p>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p> </td> <td data-bbox="1153 877 2130 949">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td> </tr> <tr> <td data-bbox="862 949 1153 965"> <p>1인 가구</p> </td> <td data-bbox="1153 949 2130 965">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td> </tr> </table>	<p>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p>1인 가구</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p>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p>1인 가구</p>	<p>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p>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p>						
<p>■ ②<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p>						
<p><b>비고</b></p>	<p>■ <b>자녀기준</b></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됩니다.</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p>					
	<p>■ <b>소득기준</b></p> <p>- 소득 확인 시점</p>					
	<p>입주자모집공고일</p>	<p>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p>	<p>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p>			
	<p>2025.02.07.</p>	<p>(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p>	<p>(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p>			
<p>-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p>													

**4-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07.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20 534 2116 893"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data-bbox="320 534 2116 58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h> </tr> <tr> <th data-bbox="320 582 772 662">구 분</th> <th data-bbox="772 582 1220 662">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 data-bbox="1220 582 1668 662">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th> <th data-bbox="1668 582 2116 662">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0 662 772 718">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72 662 1220 718">250만원</td> <td data-bbox="1220 662 1668 718">200만원</td> <td data-bbox="1668 662 2116 718">300만원</td> </tr> <tr> <td data-bbox="320 718 772 774">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72 718 1220 774">400만원</td> <td data-bbox="1220 718 1668 774">300만원</td> <td data-bbox="1668 718 2116 774">600만원</td> </tr> <tr> <td data-bbox="320 774 772 829">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72 774 1220 829">700만원</td> <td data-bbox="1220 774 1668 829">400만원</td> <td data-bbox="1668 774 2116 829">1,000만원</td> </tr> <tr> <td data-bbox="320 829 772 893">모든면적</td> <td data-bbox="772 829 1220 893">1,000만원</td> <td data-bbox="1220 829 1668 893">500만원</td> <td data-bbox="1668 829 2116 893">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data-bbox="320 901 2116 933">※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data-bbox="320 933 2116 965">※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320 1268 2116 1492"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20 1268 1388 1332">구분</th> <th data-bbox="1388 1268 1742 1332">가점제</th> <th data-bbox="1742 1268 2116 1332">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0 1332 1388 1412">전용면적 60㎡ 이하</td> <td data-bbox="1388 1332 1742 1412" rowspan="2">40%</td> <td data-bbox="1742 1332 2116 1412" rowspan="2">60%</td> </tr> <tr> <td data-bbox="320 1412 1388 1492">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body> </table> </li></ul>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1 86 539 193">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 <td data-bbox="539 86 2148 193">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td> </tr> </table>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1 236 577 284">단계</th> <th data-bbox="577 236 1055 284">비율</th> <th data-bbox="1055 236 2148 28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1 284 577 336">1단계</td> <td data-bbox="577 284 1055 336">추첨제 물량의 75%</td> <td data-bbox="1055 284 2148 336">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 data-bbox="331 336 577 389">2단계</td> <td data-bbox="577 336 1055 389">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55 336 2148 389">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 data-bbox="331 389 577 442">3단계</td> <td data-bbox="577 389 1055 442">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55 389 2148 442">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li> <li>- 청약신청 시간 * : 09:00~17:30</li> <li>*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li> <li>-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li> <li>*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li> <li>-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li> <li>*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p>	
<b>필요서류</b>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도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 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조회기간 : 2025.02.27.(목) ~ 2025.03.08.(토)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합니다.</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일시 : 2025.02.2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입주대상자(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제출 및 심사기한	대상자	제출 장소	유의사항
2025.03.03.(월) ~ 2025.03.0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li> <li>•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li> </ul>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2025.03.03.(월) ~ 2025.03.07.(금)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단독세대(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영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전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li> </ul> </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p><b>[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p><b>[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p><b>[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발급</li> </ul>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	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확인 가능 자료	임차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li> <li>•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li>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li> </ul>
다자녀 가구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입양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중인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li> </ul>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등분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발급</li> </ul>
신혼부부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 / 혼인 신고일, 자녀 수, 월평균 소득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li> <li>*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분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li> <li>-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처:해당직장 및 세무서)</li> <li>-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처:세무서)</li>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li> </ul>
		○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분리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공고일(2025.02.07.)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분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li> <li>•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신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기본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제출</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li> <li>-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입양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중인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li> </ul>
생애최초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 /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li> <li>※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li> <li>-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처:해당직장 및 세무서)</li> <li>-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처:세무서)</li>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있는 자 포함)</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분리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li>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기본증명서	신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기본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제출</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li> <li>-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입양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li> </ul>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발급용 필수)</li> <li>·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li> </ul>
	○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명 또는 날인</li> </ul>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 날인) *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이후 가입분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과세기간 2023년) ② 재직증명서 ③ 전전년도 재무제표 ④ 사업자등기부등본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급여명세서(직인날인) / (과세기간 2023년)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해당직장 / 홈텍스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1) 세무서 2) 해당직장 / 세무서/ 홈텍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 서류 모두 제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①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아닌 경우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③,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해당자격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증빙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자산가액증빙 (추가)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 입주자 포함)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단독세대(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증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모두 제출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p><b>[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p><b>[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로 지정하여 발급</li> </ul>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 입주자)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대리인 신청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발급용 필수) ·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도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1통 필요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5.03.10(월) ~ 2025.03.12(수) 3일간 (10:00 ~ 16:30)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번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 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 검증서류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 시 제외)
			계약금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추가 개별통지서류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전자수입인지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추가선택품목 계약(시공사 시공분) :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추가선택품목 계약(조합 시공분) : 조합과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①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③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접수장소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 (계약자)	
	○		위임장 (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2.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1차, 2차)	우리은행	가오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01동 301호 홍길동 → “20010301홍길동”, 2001동 1304호 홍길동 → “20011304홍길동”)
-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증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시공사, 시행사 시공분 상이)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 5%(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 대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미납 시 연체로 부과) 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말로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별로 시공사와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과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 시공사 시공분

①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15,300,000	1,530,000	13,770,000
059.9977B (59B1, 59B2, 59B3)	14,000,000	1,400,000	12,600,000
059.9943C (59C)	15,300,000	1,530,000	13,770,000
074.9894B (74B)	20,000,000	2,000,000	18,00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코니 확장 시 제공 품목

주택형	항목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주방가구(확장), 주방 상판 매립 콘센트, 안방 드레스룸(시스템 가구 포함), 전동 빨래건조대
059.9977B (59B1, 59B2, 59B3)	주방가구(확장), 주방 상판 매립 콘센트, 전동 빨래건조대
059.9943C (59C)	주방가구(확장), 주방 상판 매립 콘센트, 안방 드레스룸(시스템 가구 포함), 전동 빨래건조대, 현관 창고(시스템 가구 포함)
074.9894B (74B)	주방가구(확장), 주방 상판 매립 콘센트, 전동 빨래건조대

③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10%)	KB국민은행	465101-01-308369	롯데건설(주)
	잔금(90%)	KB국민은행	465101-01-308372	

- ※ 상기 계약은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약으로 분양대금 납부계약과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약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④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조합 시공분

①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20%)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40%)	잔금(10%)	비 고
					계약 시	2025.11.30	2026.10.30	입주지정일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 안방	4,800,000	960,000	1,440,000	1,920,000	480,000	LG전자
		선택2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200,000	1,440,000	2,160,000	2,880,000	720,000	
	프리미엄형 (UV나노, 공기청정)	선택3 (2대)	거실 + 안방	5,600,000	1,120,000	1,680,000	2,240,000	560,000	
		선택4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1,720,000	2,580,000	3,440,000	860,000	
059.9977B (59B1, 59B2, 59B3)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 안방	4,800,000	960,000	1,440,000	1,920,000	480,000	
		선택2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200,000	1,440,000	2,160,000	2,880,000	720,000	
	프리미엄형 (UV나노, 공기청정)	선택3 (2대)	거실 + 안방	5,600,000	1,120,000	1,680,000	2,240,000	560,000	
		선택4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1,720,000	2,580,000	3,440,000	860,000	
059.9943C (59C)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 안방	4,800,000	960,000	1,440,000	1,920,000	480,000	
		선택2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200,000	1,440,000	2,160,000	2,880,000	720,000	
	프리미엄형 (UV나노, 공기청정)	선택3 (2대)	거실 + 안방	5,600,000	1,120,000	1,680,000	2,240,000	560,000	
		선택4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1,720,000	2,580,000	3,440,000	860,000	

074.9894B (74B)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 안방	5,400,000	1,080,000	1,620,000	2,160,000	540,000
		선택2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400,000	1,480,000	2,220,000	2,960,000	740,000
	프리미엄형 (UV나노, 공기청정)	선택3 (2대)	거실 + 안방	6,100,000	1,220,000	1,830,000	2,440,000	610,000
		선택4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9,100,000	1,820,000	2,730,000	3,640,000	910,000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 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의 무선리모컨이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일반(거실, 침실1)에 시공 됩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조합("가오동2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지정업체와의 계약 및 시공 예정이므로, 롯데건설(주)에 하자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추가 선택품목 - 현관 중문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금 액	계약금(20%)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40%)	잔금(10%)	비 고
				계약 시	25.11.30	2026.10.30	입주지정일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059.9977B (59B1, 59B2, 59B3) 074.9894B (74B)	선택1	3연동 씨엘500도어 (8T)	1,800,000	360,000	540,000	720,000	180,000	(취)우와도어
	선택2	3연동 그랜드도어 (5T)	1,350,000	270,000	405,000	540,000	135,000	
059.9943C (59C)	-	비대칭 여닫이도어(스윙)	1,600,000	320,000	480,000	640,000	160,0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선택품목 - 단열필름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금 액	계약금(20%)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40%)	잔금(10%)	비 고
			계약 시	25.11.30	2026.10.30	입주지정일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단열필름 프리미엄LX	1,750,000	350,000	525,000	700,000	175,000	레이노
059.9977B (59B1, 59B2, 59B3)		1,650,000	330,000	495,000	660,000	165,000	
059.9943C (59C)		1,800,000	360,000	540,000	720,000	180,000	

074.9894B (74B)		1,800,000	360,000	540,000	720,000	180,000	
-----------------	--	-----------	---------	---------	---------	---------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단열필름 시공 제외됩니다.

④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단열필름

계좌 구분	계좌번호	금용기관명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 조합 시공분	351-1343-0746-83	농협	가오동2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약금(20%)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40%)			
잔금(10%)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 에어컨 및 현관 중문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시공사 시공분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 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 내용 및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조합 시행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공사 시공분

① 추가 선택품목 -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타입	식기세척기	선택1 삼성 (12인용)	900,000	90,000	810,000	-DW60T7065SS	
		선택2 LG (12인용)	1,200,000	120,000	1,080,000	-DIB22S	
전 타입	하이브리드 쿨탑 (2I+1H)	-	쿠쿠전자	550,000	55,000	495,000	-CIHR-D302FB
전 타입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수납 특화 키큰장 포함)	선택1 삼성	6,000,000	600,000	5,400,000	-삼성 비스포크 -디자인 냉장고 (RF60C90R2AP) -디자인 김치냉장고(RQ33C74E1AP)	
		선택2 LG	6,600,000	660,000	5,940,000	-LG 오브제 -디자인 냉장고 (M622GBB352) -디자인 김치냉장고(Z332GBB351)	
전 타입	욕실 복합 환기 환	-	힘펠	1,000,000	100,000	900,000	-공용, 부부욕실 설치
전 타입	주방 TV (13인치)	-	-	300,000	30,000	270,000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공간의 규격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선택품목 -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 위치 및 품목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059.9865A (59A1, 59A2, 59A3, 59A4)	거실	선택1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①	2,700,000	270,000	2,430,000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1200x2800)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선택 시 벽 마감형② 선택불가
		선택2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②	3,500,000	350,000	3,150,000	-거실·복도·주방 벽 디자인 월 -안방, 침실, 공용욕실 히든 도어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② 선택 시 벽 마감형① 선택 불가
		-	스타일업_바닥 마감형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복도·주방 바닥 유럽산 타일(600x600)
		복도	장식장	3,800,000	380,000	3,420,000	
		주방	스타일업	3,800,000	380,000	3,420,000	-주방 벽·상판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캐슬 미드웨이 선반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1	불박이장 (수납 강화형)	800,000	80,000	72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1,400,000	140,000	1,26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주방 고급 매입등, 주방 고급 식탁등
		욕실	스타일업	7,100,000	710,000	6,390,000	-욕실 벽 유럽산 타일(600x600) -욕실 선반 및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레인 샤워 수전, 공용욕실 코너 선반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ACC 및 샤워부스 색상 변경됨
059.9977B (59B1, 59B2, 59B3)	거실	선택1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①	3,800,000	380,000	3,420,000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1200x2800)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선택 시 벽 마감형② 선택불가
		선택2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②	3,400,000	340,000	3,060,000	-거실·복도·주방 벽 디자인 월 -안방, 침실, 공용욕실 히든 도어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② 선택 시 벽 마감형① 선택 불가
		-	스타일업_바닥 마감형	2,600,000	260,000	2,340,000	-거실·복도·주방 바닥 유럽산 타일(600x600)
		주방	스타일업	3,800,000	380,000	3,420,000	-주방 벽·상판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캐슬 미드웨이 선반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1	불박이장 (수납 강화형)	800,000	80,000	72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1,400,000	140,000	1,26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주방 고급 매입등, 주방 고급 식탁등	
	욕실	스타일업	7,100,000	710,000	6,390,000	-욕실 벽 유럽산 타일(600x600, 유럽산) -욕실 선반 및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레인 샤워 수전, 공용욕실 코너 선반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ACC 및 샤워부스 색상 변경됨	
059.9943C (59C)	거실	선택1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①	2,800,000	280,000	2,520,000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1200x2800)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선택 시 벽 마감형② 선택불가
		선택2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②	3,500,000	350,000	3,150,000	-거실·복도·주방 벽 디자인 월 -안방, 침실, 공용욕실 히든 도어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② 선택 시 벽 마감형① 선택 불가
		-	스타일업_바닥 마감형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복도·주방 바닥 유럽산 타일(600x600)
	복도	팬트리	1,400,000	140,000	1,260,000	-시스템 가구 포함	
	주방	스타일업	3,700,000	370,000	3,330,000	-주방 벽·상판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캐슬 미드웨이 선반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1	불박이장 (수납 강화형)	800,000	80,000	72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주방 고급 매입등, 주방 고급 식탁등	
	욕실	스타일업	7,100,000	710,000	6,390,000	-욕실 벽 유럽산 타일(600x600) -욕실 선반 및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레인 샤워 수전, 공용욕실 코너 선반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ACC 및 샤워부스 색상 변경됨	
074.9894B (74B)	거실	선택1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①	3,800,000	380,000	3,420,000	-거실 아트월, 복도 벽 유럽산 세라믹 타일(1200x2800) -거실·복도·주방 벽 시트 판넬 ※거실 스타일업_벽 마감형① 선택 시 벽 마감형② 선택불가
		선택2	스타일업_벽 마감형 ②	3,600,000	360,000	3,240,000	-거실·복도·주방 벽 디자인 월 -안방, 침실, 공용욕실 히든 도어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② 선택 시 벽 마감형① 선택 불가
		-	스타일업_바닥 마감형	2,600,000	260,000	2,340,000	-거실·복도·주방 바닥 유럽산 타일(600x600)
	주방	스타일업	4,800,000	480,000	4,320,000	-주방 벽·상판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캐슬 미드웨이 선반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4,600,000	460,000	4,140,000		
	침실1	불박이장 (수납 강화형)	1,000,000	100,000	90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1,400,000	140,000	1,26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복도·주방 고급 매입등, 주방 고급 식탁등	
	욕실	스타일업	7,100,000	710,000	6,390,000	-욕실 벽 유럽산 타일(600x600) -욕실 선반 및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 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비데 일체형 양변기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레인 샤워 수전, 공용욕실 코너 선반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ACC 및 샤워부스 색상 변경됨
--	--	--	--	--	--	---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 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신발장과 이웃하여 벽체가 조성됩니다.

③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 - 시공사 시공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시공사 시공분 (가전기기, 가구/마감재 옵션)	계약금(10%)	KB국민은행	465101-01-308369	롯데건설(주)
	잔금(90%)	KB국민은행	465101-01-308372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최초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체커뮤니티, 코인세탁실, 골프연습장(스크린 1개소 포함), 피트니스, GX룸, 사우나(남·여) 등]

## 12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단지 북동측에는 폭 25m도로(대전로), 남서측에는 대전천이 계획 되어있음. 1, 2단지 사이에는 폭 20m도로(신기로)가 계획 되어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1단지 북서측 천동홍익아파트가 최고높이 15층으로 위치해 있으며, 2단지 남서측에 저정의 공업, 창고, 상업, 가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li> <li>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li> <li>1단지 서측의 대전천변, 시민현수공원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1단지 서측의 대전천변의 둔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li> <li>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 동선, 형태, 높이, 색채,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시행인가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li> </ul>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훼손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홍보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ul>
방음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대전로 변 소음측정 결과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발주처(조합) 공사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협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방음벽의 높이가 상향될 수 있고 형태, 길이,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방음벽 설치위치는 101동 1호라인, 102동 1호라인, 104동 1호라인, 110동 1호라인의 측벽구간 단지경계부에 약 13M 높이 그리고 103동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옥탑부에 약 8M 높이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동의 저층세대의 경우 직간접적인 시야간섭, 빛공해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li> </ul>
구역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어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단지는 2021년 12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2021년 12월 24일)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인증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li> <li>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li> <li>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li> <li>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경 관련 제반사항(식재, 시설물, 포장 및 동선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li>빛공해방지 심의 및 야간경관심의 등에 따라 야간 경관 계획여부 및 계획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li> </ul>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59(A1, A2)㎡, 59B(B1, B3)㎡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미건립 단위세대 타입은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세대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마감재는 각타입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59㎡ 타입은 WHITE(화이트)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li> <li>• 단위세대는 비확장 선택 시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 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건립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POP에 명기된 실 치수는 확장형 평면도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가구 및 마감재 두께에 따라 내부치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삭하여 실측치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 마감재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됩니다.</li> <li>• 단위세대 현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li> <li>•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ul>
	<p><b>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기준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초등학교 : 대전천동초세천초공동(일방)통학구역 ② 중학교 : 동부3학교군동부4학교군 내 분산배치 ③ 고등학교 : 대전광역시단일학교군 내 지원 분산 배치</li> <li>• 학교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단지</b></p>	<p><b>공통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당 사업장은 건축경관심의를 통해 주동의 저층부 외부석재마감은 2~4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로 각 동별로 마감높이의 변화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은 일부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 외부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거동 옥탑 및 펜트하우스 세대의 외벽부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동 하부 지하1층 제연웬룸이 계획됨으로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웬룸 급기 DA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시공사 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정압기, 상하수도, 전기인입시설 등 인프라 시설의 위치, 연결방식, 형태는 현장여건 및 관할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계획이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외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당 사업장은 건축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 입면에서 발코니 입면다변화를 위해서 동일 타입이라도 서비스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과 타입은 107동, 108동, 109동이며, 타입은 59A(A1,A2,A3,A4)과 59B(B1,B2,B3)타입이 있으니 이에 유의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동호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아파트 일부동의 쓰레기분리수거함과 공용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03동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이 1단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110동도 2단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됩니다.</li> </ul>
	<p><b>단지출입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차량출입구가 인접해 있는 주동(101동 2~3호라인, 102동 1~2호라인, 107동 2~3호라인, 109동 1~3호라인, 110동 1~3호라인)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냄새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쓰레기분리수거차량, 소방차량 등)에 의해 인접동도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지 차량출입구는 총 2개소(대전로, 신기로)이며 문주 및 경비실이 설치됩니다. 단, 대전로 방면 문주의 경우 보행자 출입동선이 문주 내부가 아닌 외부 보행도로에 따라 이동되오니 유의바랍니다.</li> <li>• 2단지 차량출입구는 총 1개소(신기로)이며 문주 및 경비실이 설치됩니다. 단, 경비실이 109동 1층 측벽부에 위치하여 다른 경비실에 비해 다소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음으로 이에 유의바랍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은 1단지의 경우 102동과 103동 사이 지반층, 2단지의 경우 110동 북서측 지반층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공간 및 진출입 동선에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단지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로 입출차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웅벽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계획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텃밭 설치 시 농기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101동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3동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4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북서측에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남측으로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5동 남측, 남동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 남측에 휴게공간,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8동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9동 서측에 휴게공간,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10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동측에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필로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필로티 계획은 각 동 코어의 일부(101동 1~3호라인, 102동 2호라인, 103동 1~2호라인, 104동 3호라인, 106동 2호라인, 107동 2호라인, 108동 2,4호라인, 109동 1,4,6호라인, 110동 3호라인)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 내부 또는 외부 인접하여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아파트 주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 현장은 세대의 거실, 침실 모두 유리난간으로 계획된 창호로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우니 유의바랍니다. 가능한 1층 주출입구를 거쳐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지하주차장 1층은 2.7M 높이 이내 차량으로 E/V 진입이 가능합니다.</li> <li>•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 (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외벽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내부 관의 설치 위치에 따라 주방 및 다용도실 발코니의 창호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남동측에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문주(경비실 포함)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남동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3호라인 북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남동측 전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 북서측 후면에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문주(경비실 포함)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li> </ul>

	<p>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3동 1층에 대전로방면으로 연도형 상가가 계획되어, 상가 입주자 및 이용객에 의해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3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4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5동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5동 2호라인 북측과 남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1호라인 북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3,4호라인 서측과 동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6동 3호라인 북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 1호라인 남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 3,4호라인 서측과 북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7동과 108동 사이 지하1층 메인커뮤니티시설 및 썬큰 계획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8동 남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8동 1호라인 남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8동 3,4호라인 북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2개소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9동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9동 5,6호라인 전면에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9동 5호라인 북측, 6호라인 북서측에 DA(드라이에이리어)가 2개소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10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10동 북서측에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문주(경비실 포함)가 위치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빛공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b>주동 엘리베이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모든 코어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해당 대수 중 코어의 층수가 30층을 초과할 경우 입주민의 피난이 용이하기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의 제연설비는 승강로 가압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급기덤편퍼가 엘리베이터 승강로 벽체에 설치됩니다.</li> <li>• 107동과 108동 사이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의 선큰(오픈공간)에 지상으로부터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별도의 셔틀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li> <li>• 108동의 29층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동 후면부에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li> </ul>
<p><b>외부코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지 커뮤니티시설 선큰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계단의 형태 및 엘리베이터의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b>무인택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 이상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개수,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창고는 지하1층, 지하2층 주동하부PIT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p><b>지하 주차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진입층(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총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전기차주차 포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시설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하자가 아닌 사항으로 이에 유의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일부 바닥면 및 벽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b>부대 복리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는 107동 108동 사이 지상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단지 관리사무소와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스포츠시설(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사우나, 코인세탁실 등)은 107동과 108동 사이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단지 스카이어커뮤니티(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108동 3,4호라인 29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108동 3,4호라인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2단지 경로당(시니어클럽)은 109동 5,6호 라인 동측 지상 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2단지 관리사무소와 공동체커뮤니티, L-라운지가 109동 5,6호 라인 동측 지상1층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li> <li>• 작은도서관(북카페)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 시설의 가구 및 가전,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가구류의 설치위치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공급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부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또한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103동, 110동] 옥상층,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인근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1층 분전반실, 뿔룸#9], 109동 분전반실 뿔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1,105,106,107동 및 109,110동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li> <li>•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됨, 단 3년 후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단위세대</b></p>	<p><b>공통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1층 H:2,5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li> <li>•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출논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li> <li>•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li> <li>•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li> <li>•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타입의 실외기실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배관은 층상배관(당해층 배관)으로 설치되며,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제공품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특성,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li> <li>•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되고,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li> <li>•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li> <li>•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반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가구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li> <li>•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 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창호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li> <li>•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소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FL기준 1,200mm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 및 일부 분할창이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철제난간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전기/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물 인종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li> <li>•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2개소가(거실, 안방) 조합공사분으로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조합공사분) 세대는 제외됩니다. (조합공사분 관련하여 시공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공정 상 일부 중복하여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냉난방으로 위한 전시용품으로 본공사와 무관하며, 추후 조합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욕실내 난방코일이 적용(욕조바닥 및 샤워부스 하부 제외)되며, 욕실 난방은 별도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인접 침실과 연동).</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li>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수량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욕실배기는 공동배기 입상 방식으로 옥상으로 배출되며, 옥상에 강제배기팬이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욕실 앞 천정에는 화재 감지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li> <li>• 세대 욕실 배관은 층상배관방식으로 당해층 욕실 바닥 무근에 오배수 배관이 매립 시공됩니다.</li> <li>• 세대 세탁 배수구 및 세탁수전, 손빨래수전, 발코니수전의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li> <li>• 세대 기전시설물(배관 및 덕트)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 우물천정의 폭은 일부 조절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li> <li>건본주택 옥실에 설치된 복합환기팬은 유상흡선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미선택 시 일반 고정압 환기팬이 기본 제공 됩니다.</li> <li>건본주택 옥실에 설치된 비데일체형양변기/하부장일체형세면기/수전류/약세사리류는 유상흡선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li> </ul>
	<p><b>발코니 및 실외기실</b></p>	<p>(미선택 시 기본 제공품목은 건본주택 옥실 내 공지를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유상흡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li> <li>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모든 유상흡선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li> <li>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li> <li>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li> <li>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흡선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 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li> <li>유상흡선 설치 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당 현장의 경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상흡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시공분은 시공사 와는 무관하므로 당사 하자 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ul>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 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⑦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됩니다.

## 13 기타사항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호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지하1층 2.7m, 지하 2층 2.3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 (MMI 등급)
내진능력 (MMI 등급)	Ⅵ-0.213g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이하 계약자, 또는 입주자)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단, 공사 현장 사정 등을 감안 하여 부득이하게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호 서시 (개정 2021. 8. 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1단지)  
 2. 신청자: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499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환경적 차단성능	★★★★
2. 생활환경적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환경실금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동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근거리 녹지 조성	-
21. 자연채널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장(비포장)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정능도도정장차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편의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면적시설의 접근성	★★★★
5. 근접연락의 용이관리 계획	★★★★
6. 문명-유치관리 문서 및 제노빌 계획	★★★★
7. 사용자 편의성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회적 복지혜택	★
10. 생활공간에 사회적 복지혜택	★
11. 생활공간에 편의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내 밀도 확보율	★
13. 공동주택의 종합서비스	★
14. 생활안전의 종합수준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간지 및 경보설비	★★
2. 피난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안내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호 서시 (개정 2021. 8. 27.)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1단지)	인증번호: G-SEED-P-2023-0864-6
건축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공일: 2024.06.01.(예정)	유효기간: 2023.07.28. - 사용승인일(사용완료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서 날짜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499 일원	연면적: 지하2층, 지상33층
층수: 지하2층, 지상33층	연면적: 111,965.79㎡
연면적: 111,965.79㎡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 등급: 우수(2등급)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5)  
 [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2-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시) 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1단지)	인증번호: 22-주-14-0251
건축연도: 2024.06.01	평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499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층수: 지하2층 / 지상33층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완료 완료일
연면적: 111,965.79㎡(㎡)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 등급: 1등급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사장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1-0007300	106,326,67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 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상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1566-9009)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지여이앤씨
감리금액	3,806,078,100원	963,033,000원	소방 : 662,200,000원 / 정보통신 : 283,250,000원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가오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65271-0011402	110111-0014764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기로 59, 1층 (가오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잠원동)

-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22/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번지 / ☎ 042) 335-2500